

융복합 사회에서 장애여성 안전의 설명요인에 대한 연구

곽지영*, 강미경**

승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The Study on the Explanatory Factors of the Disabled Women's Safety in the Convergence Society

Jee-Young Kwak*, Mi-Kyung Kang**

Dept. of Social Welfare,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Social Work Research Institute of Ma Sil**

요 약 본 연구는 전국의 장애여성 37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융복합 사회에서의 장애여성의 안전에 대한 설명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사고로부터 안전’과 ‘범죄로부터 안전’으로 구분한 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들이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안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고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지역사회 영역으로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 수준, 물질적 곤궁, 장애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과 개인 영역의 장애수준이 장애여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이었고,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유형, 사회적 지지가, 개인 영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장애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융복합적으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장애여성, 사고로부터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 물질적 곤궁,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융복합사회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actors explaining the safety of disabled women in the convergence society and was surveyed 374 disabled women nationwide.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safety of disabled women from the accidents and crimes in terms of individual, familial,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safety from accident was largely explained by the community type and social capital condition in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domain. The material hardship in characteristics of familial domain and disability level i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domain explained the safety from accident also. 2) the safety from crime was largely explained by the material hardship in characteristics of familial domain. And the community type and social support condition in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domain and the educational level i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domain explained the safety from crime.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practic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ensure the disabled women's safety.

Key Words : disabled women, safety from the crime, safety from accident, material hardship,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convergence society

Received 20 February 2015, Revised 26 March 2015

Accepted 20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Mi-Kyung Kang
(Social Work Research Institute of Ma Sil)

Email: kmichele@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인간의 권리로서의 안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34조 6항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 수준의 합의와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도 대한민국의 재난 시스템 안에 있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는 시민들에게 상실감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를 통해 ‘4.16 인권선언’을 초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존중받아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1].

장애인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중의 하나이다. 2012년 12월 화재로 사망한 장애여성 활동가 김주영 사건[2] 과 뇌성마비 장애여성의 보복살해 등[3]의 사건을 통해 재난 및 범죄 관련 사고에 직면했을 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약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여성은 ‘여성’과 ‘장애’를 둘러싼 다중차별과 억압,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이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에게 안전은 가족에 의해 고립되어 집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안전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감내해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기존의 장애여성 안전 문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위험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장애여성의 삶의 질에 관련된 안전 문제는 범죄로부터의 위험과 더불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에 대한 고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융복합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안전문제는 복지적 측면에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의 안전문제는, 세월호와 같은 재난과 관련한 정책, 교통 및 건설정책, 형사정책 그리고 건강정

책 등에서 함께 배려하는 정책이 될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융복합사회에서 안전은 장애여성에게 날마다 직면해야 할 삶의 문제이며, 삶의 질과 생존권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정책 뿐 아니라 다른 여타 정책 적 결정 어디에서도 이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은 위험상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여성이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재하는 위험’과 장애여성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한 ‘주관적 위험’을 포괄한 모든 위험이 관리되는 상태를 안전으로 정의하고, 안전을 ‘사고로부터 안전’과 ‘범죄로부터 안전’으로 구분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들이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안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의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중 일부요소와 장애여성 안전에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전국 장애여성에게 확대하여 조사하여, 장애여성의 안전 관련 설명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장애여성관련 단체를 통해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장애여성 당사자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표집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인 안전관련 실태를 조사하였고, 실태조사 뿐 아니라 안전권 관련 설명요인들을 함께 탐색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

2.1 장애여성과의 안전

‘안전’은 위험이 관리 또는 통제되는 상태를 의미[4]한다. 즉, 안전은 무엇을 ‘위험’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위험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기 보다는 권력과 통제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5].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란 존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낳는다[6].

본 연구는 김유나, 이현지(2009)의 연구[5]에서 장애여

성에 대한 안전의 범위를 ① 범죄로부터의 안전(safety from crime)과 ② 사고로부터의 안전(safety from accidents)으로 제한하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가운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던 안전의 틀을 기준으로 장애 여성의 안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사고로부터 안전(safety from accident)

위험에 대한 순발력있는 대처가 어려운 아동, 장애인 과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융복합사회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통계나 연구도 거의 전무할 정도로 장애여성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더욱이 저소득층일수록 사고로부터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현실에서, 장애여성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포함되어 있어, 사고로부터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5].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실태조사[7]의 연구 결과 주로 가정 내보다 외부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경사면과 고르지 못한 지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도로에서 장애물이나 고르지 못한 지면이나 편의증진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사면 등은 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외부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환경요인을 조사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이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보완하여, 감각적인 장애로 인해 순간적인 위험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큰 사고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감각장애인(시각 및 청각)들도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1.2 범죄로부터의 안전(safety from crime)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 또는 장애남성에 비해 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8, 9, 10]. 일단 장애여성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고립되기 쉽고 가족에게 의존적이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되고 있다[11, 12]. 또한 장애여성은 폭력 위험에 놓여 있으며, 그 폭력을 종결하기 위한 장벽이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폭력의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

출된다[9]. 실제로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8, 9, 10].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14], 비혼여성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면서 어렵고 곤란한 점에 대해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76.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성적 취약성과 복합적 취약성이 여성의 주관적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설명한다면, 장애여성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 많은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15].

2.2 장애여성의 안전 관련 요인

생태학적 관점에 의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안전관련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 특성, 가족특성 및 지역사회특성으로 요인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2.2.1 개인특성과 안전

개인특성 요인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장애요인을 살펴 보았다. Waldrop과 Stern(2003)에 의하면 미국은 16세-64세 장애여성은 약 18%, 65세 이상은 43%를 구성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폭력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규명하였다[12: p. 1002 재인용]. 교육 수준은 높지만 이 동성이 적은 장애여성이 폭력 등의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10]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장애여성이 가정폭력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9,16].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장애정도 등과 같은 장애요인도 장애여성의 폭력 등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10, 17], 장애요인이 안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가족특성과 안전

가족특성으로는 혼인상태와 빈곤요인을 살펴보았다. 장애여성의 혼인상태는 안전과 상관성이 있는데, 사별, 별거보다 기혼, 미혼, 이혼 상태의 장애여성이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 장애여성이 속한 가구의 빈곤 여부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 연구결과 장애여성의 빈곤, 공공부조 수급과 같이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10, 13, 17, 18].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빈곤여부를 공식적인 빈곤 지표로서 기초생활수급여부와 경험적 빈곤 지표인 물질적 곤궁 정도를 탐색 요인에 포함하였다. 물질적 곤궁(material hardship) 지표는 전통적인 빈곤 개념의 대체 혹은 보완적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음식, 의료서비스, 생활 필수재, 주거 등과 관련하여 삶에서의 실질적인 박탈을 측정함으로써 빈곤가정의 경제적인 삶의 질의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

2.2.3 지역사회특성과 안전

지역사회특성 변인으로는 지역유형, 사회적자본, 사회적지지를 살펴보았다.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은 거주 지역에 따라 폭력 등의 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소득 지역과 높은 범죄 지역에서 살 경우 폭력과 학대에 취약해진다[10, 20]. 거주 지역의 유형은 또한 이동수단(예를 들어, 저상버스와 지하철 이용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사고로부터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Nosek과 동료들은 사회적 역할이 모호하고 이동성이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지지를 잘 받지 못하는 장애 여성이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0]. 즉 친척, 친구, 이웃 등 비공식적인 사회적지지가 부족한 장애여성이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9]. 또한 장애여성의 안전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으나, 사회적 자본은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 기제가 될 수 있으므로[21], 안전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으로 판단되어 포함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여성의 제반 특성과 안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장애여성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1 연구문제

- 1) 장애여성과 관련된 요인 중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2) 장애여성과 관련된 요인 중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장애여성과 관련된 요인 중 장애여성의 사고안전과 범죄안전을 보다 잘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2 연구 참여자와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여성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능력의 한계로 설문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자료 수집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임의표집방법에 따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산하 10개 지부와 2개 회원단체인 시각장애인여성회와 청각장애인여성회 및 장애여성네트워크 등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장애인 특성에 따라 면접 및 자기보고식 조사방식에 의해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9주 동안에 걸쳐 배포 후 수집되었다. 총 391명이 응답하였고,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는 조사에 응답한 391명 중 374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3.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장애여성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된 구조화된 질문지와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실태 관련 척도는 김유나, 이현지의 연구[5]에서 사용한 공공장소의 안전실태와 이동수단의 안전실태 및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실태(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폭력 실태)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다음과 같다. 공공장소 안전 .920, 이동수단 안전 .689, 신체, 언어폭력 .855,

성폭력 .831, 고립 .835, 정신, 정서학대 .890, 재산권, 소유권 침해 .875 등이다.

사회적 자본은 노정민[22]이 개발한 사회적 자본 척도를 참조하여, 장애여성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한 10문항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5였다.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23]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한 척도 25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73이었다.

물질적 곤궁은 Adam과 동료들[24]이 개발한 물질적 곤궁 척도(Material Hardship Measurement)를 번역한 25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1이다.

3.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문항별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고, 기술 분석을 통해 응답자와 가족의 일반적 사항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 변수 중 장애여성의 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별 변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Domains and Variables

categories	variables
individual	age, education level, severity of disability(severe(level 1~3)=1, mild(level 4~6)=0)
family	presence of a spouse(married=1, single/divorced/bereavement/others=0), recipient of basic living(yes=1, no=0), material hardship(yes=1, no=0)
community	community type(metro=1, local=0), social capital(5 point scale), social support(5 point scale)

평균 연령은 47.3세였고 연령대는 40대(30.9%), 50대(28.9%), 30대(21.2%)의 순으로 30~5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년수는 평균 11.7년으로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7.7%는 직업이 없었고, 22.3%는 전업주부였으며, 50.0%는 사무직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다. 장애 특성을 살펴보면, 지체장애(60.3%)가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15.1%), 시각장애(13.0%), 청각장애(8.9%), 기타장애(11.6%) 순이었다. 장애 정도를 알 수 있는 장애등급의 경우, 중증 정도인 1~3급이 82.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경증이 11.3%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categories	N	%	
age (N=349)	under 20 years	16	4.6
	30 years	74	21.2
	40 years	108	30.9
	50 years	101	28.9
	over 60 years	50	14.3
	Mean	47.3(SD=11.07)	
education level (N=355)	uneducated	15	4.2
	elementary school	29	8.2
	middle school	58	16.3
	high school	137	38.6
	junior college	29	8.2
	university	71	20.0
	graduate school	16	4.5
Mean	11.7 years(SD=3.95)		
religion (N=359)	christianity	213	59.3
	buddhism	50	13.9
	confucianism	5	1.4
	islam	1	.3
	others	90	25.1
	types of job (N=354)	self-employed	12
production in engineering		5	1.4
office job		58	16.4
student		13	3.7
research job		2	.6
housewife		79	22.3
administrative position		1	.3
simple labor		14	4.0
service sector		17	4.8
unemployed		98	27.7
others		55	15.5
types of disability (N=370)	physical disability	223	60.3
	brain lesions	56	15.1
	visual impairment	48	13.0
	hearing impairment	33	8.9
	others	10	2.7
degree of disability (N=366)	1	116	31.0
	2	121	33.1
	3	68	18.6
	4	29	7.9
	5	15	4.1
	6	17	4.6

4. 연구결과

4.1 장애여성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 특성

4.1.1 개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74명이었다. 응답자

4.1.2 가족 특성

응답자의 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응답자의 30.2%는 미혼이었으며, 기혼인 경우는 52.0%,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기타의 경우는 16.8%

였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은 평균 2.9명으로 그 중 1인 단독가구는 17.4%였고, 82.6%는 2명 이상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경제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물질적 곤궁을 살펴본 결과, 전체 34.3%가 수급자였으며, 물질적 곤궁을 경험한 정도는 총점 평균 1점 중 0.2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빈곤층 여성가장에게 물질적 곤궁의 일부 항목을 적용한 진미정, 김은정의 연구결과[25]와 비교해 볼 때 물질적 곤궁의 평균값 0.56에 비해서도 낮아서 장애여성의 물질적 곤궁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Family

categories		N	%
marital status (N=364)	single	110	30.2
	married	193	53.0
	divorced	25	6.9
	bereavement	29	8.0
	others	7	1.9
family size (N=340)	1	59	17.4
	2	67	19.7
	3	95	27.9
	4	82	24.1
	5	30	8.8
	over 6	7	2.1
Mean		2.9(SD=1.30)	
recipient of basic living (N=361)	yes	237	65.7
	no	124	34.3
material hardship (N=366)	Mean (total 1 point)	0.25(SD=.24)	

4.1.3 지역사회 특성

응답자의 46.6%는 특별·광역시에서, 53.0%는 시·도에서 지내고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 소속감, 연대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은 총 5점 중 2.88로 중간보다 약간 낮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 정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총 5점 중 3.20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categories		N	%
community type (N=369)	metro	173	46.0
	local	196	53.0
social capital (N=365)	Mean (total 5 point)	2.88(SD=.56)	
social support (N=367)	Mean (total 5 point)	3.20(SD=.72)	

4.2 장애여성의 안전

4.2.1 장애여성의 사고안전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의 상태는 총평균 5점 중 2.78로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고안전 중 현재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포함한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은 2.63이었고, 대중교통 이용, 보행 등을 포함한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은 2.94로 모두 보통 수준 보다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공공장소에 대해 더 안전하지 못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Table 5> Disabled Women's Safety from Accident

categories		Mean	SD
total (N=374)	Mean (total 5 point)	2.78	.56
safety of public places (N=372)	Mean (total 5 point)	2.63	.56
safety of public transportation (N=344)	Mean (total 5 point)	2.94	.68

* The lower the score, the lower the safety level.

4.2.2 장애여성의 범죄안전

장애여성이 경험한 범죄안전 상태는 총평균 4점 중 3.27로 중상 정도였다. 이는 사고안전 상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범죄안전의 하위 요인 중 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요인은 '재산권, 소유권침해 안전'으로 평균 3.51이었고, '언어, 신체폭력 안전'(2.91), '정신, 정서학대 안전'(3.23)이 가장 낮아 장애여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 신체 폭력과 정신, 정서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Disabled Women's Safety from Crime

categories		Mean	SD
total (N=374)	Mean (total 4 point)	3.27	.49
safety from isolation (N=374)	Mean (total 4 point)	3.29	.68
safety from verbal & physical violence (N=373)	Mean (total 4 point)	2.91	.43
safety from sexual violence (N=373)	Mean (total 4 point)	3.42	.60
safety from mental & emotional violence (N=373)	Mean (total 4 point)	3.23	.61
safety from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N=373)	Mean (total 4 point)	3.51	.58

* The lower the score, the lower the safety level.

4.3 장애여성 안전에 대한 설명요인

4.3.1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에 대한 설명요인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을 설명하는 변수를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하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에서, 또 각 영역을 구성하는 변수 중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Explained Factors Associated with Safety from Accident (1)

categories		Model 1 (N=334)		Model 2 (N=351)		Model 3 (N=355)	
		B	β	B	β	B	β
individual	age	-.002	-.049				
	education level	-.006	-.041				
	severity of disability	.191	.130*				
family	presence of a spouse			-.035	-.032		
	recipient of basic living			-.049	-.042		
	material hardship			-.479	-.209***		
community	type					.159	.141**
	social capital					.265	.265***
	social support					.041	.053
Constant		2.914		2.934		1.812	
R ²		.019		.050		.103	
adjusted R ²		.010		.042		.095	
F		2.098		6.128***		13.450***	

*p<.05, **p<.01, ***p<.001

장애여성의 개인 특성이 사고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수 중 '장애정도'가 사고안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보다 사회참여 빈도와 범위가 넓는데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제한되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개인 특성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 특성은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을 5%만 설명하였

다(p<.001). 가족 특성 중 '물질적 곤궁'이 사고안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물질적 곤궁 경험이 많을수록 일상적인 의식주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어 장애여성이 사고안전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특성이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0.3%로 가장 높았다(p<.001). 그 중에서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이 사고안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교통수단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대도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지역 사회의 안전, 소속감, 연대감 등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을 설명하는 각 영역의 특성을 통제된 후 각 영역별 설명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우선 개인 특성과 가족 특성별 변수를 모두 투입한 혼합한 모형에서 장애여성의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물질적 곤궁 경험이 많을수록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30, p<.01). 개인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혼합한 모형에서는 장애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사고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F=8.091, p<.001). 가족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혼합한 모형에서는 물질적 곤궁 경험이 많을수록,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F=8.070, p<.001). 개인, 가족, 지역사회 특성별 변수를 모두 투입한 혼합모형의 설명력은 15.4%로 다른 모형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즉,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은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사고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6.247, p<.001).

<Table 8> Explained Factors Associated with Safety from Accident (2)

categories	Model 4 (N=324)		Model 5 (N=324)		Model 6 (N=342)		Model 7 (N=317)		
	B	β	B	β	B	β	B	β	
individual	age	-.001	-.021	-.006	-.115			-.005	-.105
	education level	-.009	-.067	-.011	-.078			-.012	-.085
	severity of disability	.179	.121*	.197	.135*			.204	.139*
family	presence of a spouse	-.041	.063			-.025	-.023	-.018	-.016
	recipient of basic living	-.082	-.070			-.027	-.023	-.042	-.036
	material hardship	-.489	-.211***			-.279	-.120*	-.252	-.108
community	type			.168	.153**	.156	.139**	.169	.153**
	social capital			.279	.283***	.263	.255***	.275	.270***
	social support			.052	.071	.022	.029	.033	.045
Constant		3.064		2.092		1.980		2.242	
R ²		.071		.132		.126		.154	
adjusted R ²		.053		.116		.110		.130	
F		4.030**		8.091***		8.070***		6.247***	

*p<.05, **p<.01, ***p<.001

4.3.2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에 대한 설명요인

다음으로는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설명하는 변수를 사고안전에서와 동일하게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하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에서, 또 각 영역을 구성하는 변수가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과 같다.

장애여성의 개인 영역의 특성이 범죄안전을 설명하는 정도는 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 변수 중 ‘교육년수’가 범죄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교육을 적게 받을수록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 역량 즉 정보 접근과 활용 능력이 더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가족 영역의 특성은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21.2% 설명하였다(p<.001). 특히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물질적 곤궁을 경험할수록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장애여성의 물질적 곤궁 경험은 사고안전과 범죄안전에서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영역의 특성은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10.0% 설명하였다(p<.001). 그 중에서 ‘지역사회 유형,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여성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고,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범죄안전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은 가족, 지역사회, 개인 영역 특성의 순으로 설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9> Explained Factors Associated with Safety from Crime (1)

categories	Model 1 (N=334)		Model 2 (N=351)		Model 3 (N=355)		
	B	β	B	β	B	β	
individual	age	-.003	-.063				
	education level	.026	.202***				
	severity of disability	.094	.070				
family	presence of a spouse			-.060	-.060		
	recipient of basic living			-.138	-.130**		
	material hardship			-.848	-.414***		
community	type				.140	.143**	
	social capital				.063	.072	
	social support				.167	.248***	
Constant		3.100		3.556		2.491	
R ²		.059		.212		.100	
adjusted R ²		.051		.205		.092	
F		6.950***		31.223***		13.033***	

*p<.05, **p<.01, ***p<.001

다음으로는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설명하는 각 영역의 특성을 통제된 후 각 영역별 설명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우선 개인 특성과 가족 특성별 변수를 모두 투입한 혼합한 모형에서 장애여성의 교육년수가 적을수록, 물질적 곤궁 경험이 많을수록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821, p<.001). 개인과 지역사회 영역의 특성을 혼합한 모형에서는(F=10.511, p<.001) 장애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년수가 적을수록,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가족과 지역사회 영역 특성의 혼합모형에서는(F=20.129, p<.001) 장애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물질적 곤궁 경험이 많을수록,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고 있고,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범죄로부터 안전하

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영역별 특성을 합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 모형은 장애 여성의 범죄안전을 29.7% 설명하였다(p<.001). 즉, 장애 여성의 교육년수가 적을수록, 경증장애를 갖고 있고, 물질적 곤궁 경험이 많을수록,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고, 그 중에서도 물질적 곤궁 경험이 범죄안전을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질적 곤궁 경험과 범죄안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9, 10, 12, 13, 18]과도 같은 결과로 빈곤으로 인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들이 범죄안전에도 더 많이 위협받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0> Explained Factors Associated with Safety from Crime (2)

categories	Model 4 (N=326)		Model 5 (N=324)		Model 6 (N=342)		Model 7 (N=317)		
	B	β	B	β	B	β	B	β	
individual	age	-.002	-.039	-.005	-.115*			-.004	-.079
	education level	.021	.163**	.021	.166**			.018	.140*
	severity of disability	.096	.071	.110	.084			.117	.088*
family	presence of a spouse	-.050	-.050			-.055	-.056	-.038	-.038
	recipient of basic living	-.098	-.092			-.120	-.114*	-.077	-.072
	material hardship	-.810	-.381***			-.776	-.380***	-.747	-.353***
community	type			.134	.135*	.119	.120*	.119	.118*
	social capital			.118	.132*	.010	.011	.049	.053
	social support			.141	.211***	.112	.167**	.093	.140*
Constant	3.354		2.413		3.090		2.955		
R ²	.230		.165		.264		.297		
adjusted R ²	.215		.150		.251		.277		
F	15.821***		10.511***		20.129***		14.474***		

*p<.05, **p<.01, ***p<.001

5.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안전정책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장애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을 탐색하였다.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고로부터 안전 상태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었고, 공공장소 사고에 대한 안전이 가장 낮았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 중 지역사회 요인이 장애여성의 사고로부터 안전 상태를 설명하

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요인 중에서도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 수준이 유의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교통수단,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및 신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요인 중에서는 물질적 곤궁 경험이 장애여성의 사고 안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실질적 빈곤상태에 놓인 장애여성은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주거 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요인에서는 장애 정도가 경증일수록 사고로부터 안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 요인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요인 중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은 단독 모델은 물론 모든 모델에서 장애여성의 사고안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었다. 가족 요인 중 물질적 곤궁은 개인 요인, 지역사회 요인과 조합한 모델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인 요인 중 장애정도 또한 가족 요인, 지역사회 요인과 조합모델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범죄로부터 안전 상태는 중상 정도 수준이었고 ‘언어, 신체폭력’ 안전 수준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정신, 정서학대’, ‘고립’, ‘성폭력’, ‘재산권, 소유권침해’의 순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장애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 모두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그 중에서는 가족 요인이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 상태를 설명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 요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물질적 곤궁의 영향력이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이는 빈곤이 사고안전뿐 아니라 범죄안전 등 장애여성의 안전 전반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 곤궁이 영향력이 더 강력했는데, 가족 요인을 개인 요인, 지역사회 요인과 각각 혼합하였을 때 기초생활수급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주관적 빈곤 경험인 물질적 곤궁의 설명력만 유의하였다. 이는 빈곤이 장애여성 삶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반영해 주는 결과로서 공식적 안전망에서 걸러지는 빈곤의 조건 뿐 아니라 주관적이며, 환경적인 빈곤 상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지역사회 요인 중에서는 지역유형과 사회적 지지 수준이 범죄안전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범죄에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여성의 경우는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혼자 힘으로 범죄의 위협에 대처할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급박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망의 존재가 범죄에서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사고에서의 안전에는 사회적 자본의 요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와 지역 안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라는 인식이 사고에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유형, 사회적 지지, 물질적 곤궁, 교육년수는 단독 모델과 각각의 요인을 조합한 혼합 모델에서 모두 장애여성의 범죄안전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안전 관련 제도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도시와 그 외 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장애인 공공편의시설 및 이동수단의 점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을 통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장애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는 장애여성의 안전이 접근권 및 이동권의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교통 및 건설정책을 계획할 때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과 노인, 여성 등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취약한 대상 등을 함께 고려한 교통, 건설, 재난 및 건강 정책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안전에 주는 영향에 주목하여, 다양한 장애여성 단체와의 연대 및 지역사회 주민 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도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도 필요하며, 스스로의 필요를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여성과 그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주관적 빈곤이 안전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생존권과 주거권이 상호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생존권의 확보에는 안전한 주거를 전제로 두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안전한 주거 및 주거환경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비혼 1인 가구여성에게도 절실한 안전 대책이 될 수 있다. 안전한 주거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및 주택 정책의 계획 단계부터, 장애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고려한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장애정도와 교육년수가 의미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장애여성의 교육년수가 취약한 것이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여성의 경우,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제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위험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적인 관계망이 부재될 가능성이 높아,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여성의 경우, 다양한 재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실제적인 지식 확충과 더불어 개인적인 지지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정도 중 경증이 더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안전정책이 중증 장애인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안전의 문제에서 경증장애여성은 중증장애여성에 비해 독립적인 이동의 빈도가 높고, 사회활동의 참여가 빈번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증장애여성의 안전문제는 정책적 관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비혼 1인 가구여성도 안전문제에 취약하다고 느껴,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경증장애여성도 안전문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융복합사회에서 현행 비장애여성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NFC 택시안심서비스, 원터치 SOS, 112긴급신고앱 등 대국민 안전귀가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핸드폰으로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시각장애 및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음성인식이 가능한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 특정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대책보다 비장애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대책에 장애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체 장애여성을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관련 기존 연구가

많지 않아서 전반적인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능한 전국 장애여성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연구 분석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장애여성의 안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장애인실태조사의 항목에도 안전관련 문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DOI: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35433&ref=D(2015. 03. 12)
- [2] DOI: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7845.html (2012. 10. 28)
- [3] DOI: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1&NewsCode=001120121210095418529179 (2012. 12. 10)
- [4] P. Maurice, M. Lavoie, A. Chapdelaine, and Hélène Bélanger Bonneau, "Safety and safety promo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aspects", *Chronic Diseases in Canada*, Vol. 18, No. 4. pp. 179-186, 1997.
- [5] Y. N. Kim & H. J. Lee,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of Policy Supports for Safety of the disabled women i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09.
- [6] H. C. Lim, J. Y. Yee, K. M. Park, & D. H. Seol. 1997. "An Emperical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and psycho-physical saf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0 No.1, pp. 161-199, 1997.
- [7] J. Y. Kong, "The safety incidents survey of mobility assistive device us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2. No. 2, 2-16, 2013..
- [8] S. L. Martin, N. Ray, D. Sotres-Alvarez, L. L. Kupper, K. E. Moracco, P. A. Dickens, & Z. Gizlic, "Physical and sexual assault of women with disabilities". *Violence Against Women*, Vo. 12, No. 9, pp. 823-837, 2006.
- [9] M. A. Nosek, C. A. Howland, & R. B. Hughes, "The investigation of abuse and women with disabiliti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7, No. 4, pp. 477-499, 2001.
- [10] M. A. Nosek, R. B. Hughes, H. B. Taylor, & P. Taylor, "Disability, psycho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bused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2, No. 9, pp. 838-850. 2006.
- [11] E. J. Lim, "The practical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handicapped women",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6. pp. 183-210. 2004
- [12] M. A. Curry, P. Renker, R. B. Hughes, S. Robinson-Whelen, N. Oswald, P. R. Swank, & L. E. Powers, "Development of measures of abuse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erpetrator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5, No. 9, pp. 1001-1025, 2009.
- [13] M. A. Nosek, C. A. Howland, D. H. Rintala, M. E. Young, & G. F. Chanpong, "National study of woman with physical disabilities: final report". *sexuality and disability*, Vol. 19, No. 1, pp. 5-39, 2001.
- [14] S. E. Lee, H. J. Park, & J. M. Yoo,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of Policy Supports for Safety of the Single Women i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012.
- [15] K. S. Choi, "The Need of Establishment for Shelter for the Sexual Abuse Women with the disability. The panel discussion about the Shelter for the Sexual Abuse Women with the disability. *Korean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2001.
- [16] J. A. Schumacher, S. Feldbau-Kohn, A. Smith-Slep, & R. E. Heyman, "Risk factors for male-to-female partner physical abus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6, pp. 281-352. 2001.
- [17] M. A. Curry, D. Hassouneh-Phillips, & A. Johnston-Silverberg, "Abuse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 ecological model and review". *Violence Against Women*, Vol. 7, No. 1, pp. 60-79. 2001
- [18] E. Slayte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disability service system case management practi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 18, pp.182-199, 2009.

[19] T. Ouellette, T. Burstein, D. Long, & E. Beecroft, Measures of material hardship: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4.

[20] G. Llewellyn, D. McConnell, & L. Ferronato, L. Prevalence and outcomes for par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children in an Australian court sample, *Child Abuse & Neglect*, Vol. 27, pp. 235-251, 2003.

[21] C. Bjornskov, The happy few : cross 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Vol. 56, No. 1, pp. 3-16. 2003.

[22] M. R. Ju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aily-based activities and project-based activities on social capital in the regeneration project of residential areas, Hany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doctorial thesis), 2003

[23]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doctorial thesis), 1995.

[24] A. C. Carle., K. J. Baunam, & K. Short. Assessing the measurement and structure of material hardship in the United St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92. pp. 35-51, 2009.

[25] M. J. Chin & E. J. Kim, Maternal hardship and Income sources among low-income female-headed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27, pp. 163-188. 2005.

[26] DOI:<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50225113234826559> {2015. 02. 25}

[27] Y. S. Kim.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master degree thesis). 1995.

곽 지 영(Kwak, Jee Young)



- 199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장애, 여성
- E-Mail : joykwak@mail.kcu.ac

강 미 경(Kang, Mi Kyung)



- 1988년 2월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2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박사)
- 2014년 4월 ~ 현재 :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소장

- 관심분야 : 아동, 가족, 사례관리
- E-Mail : kmichele@hanmail.net